

case
9

자동차용 전면유리

요약

사례명	자동차용 전면유리 원산지 및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판정
사례번호	NY N343290 (2024.11.04.)
사실관계	중국산 평판 유리를 멕시코로 수입한 후, 고온 가열 및 프레스 공정을 통해 곡면 형상을 부여하고, 센서·브래킷·핀 등을 장착하여 최종 제품인 자동차 전면유리로 완성한 뒤 미국으로 수출
쟁점 및 판정	①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NAFTA 혹은 USMCA 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기준(19 C.F.R. § 102.11)에 따라 세번변경 기준을 충족하였으므로 최종 제품의 원산지표시 목적상 원산지는 멕시코임
	②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중국산 평판 유리는 멕시코에서 고온 가열, 성형, 냉각, 라미네이션 등의 공정을 거쳐 자동차용 전면유리라는 식별 가능한 새로운 상업적 상품으로 변형되었으므로, 멕시코에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근거법령	- 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19 U.S.C. § 1304) -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19 U.S.C. § 2411) -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Regulations Part 134(19 C.F.R. § 134) -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Regulations Part 102.11(19 C.F.R. § 102.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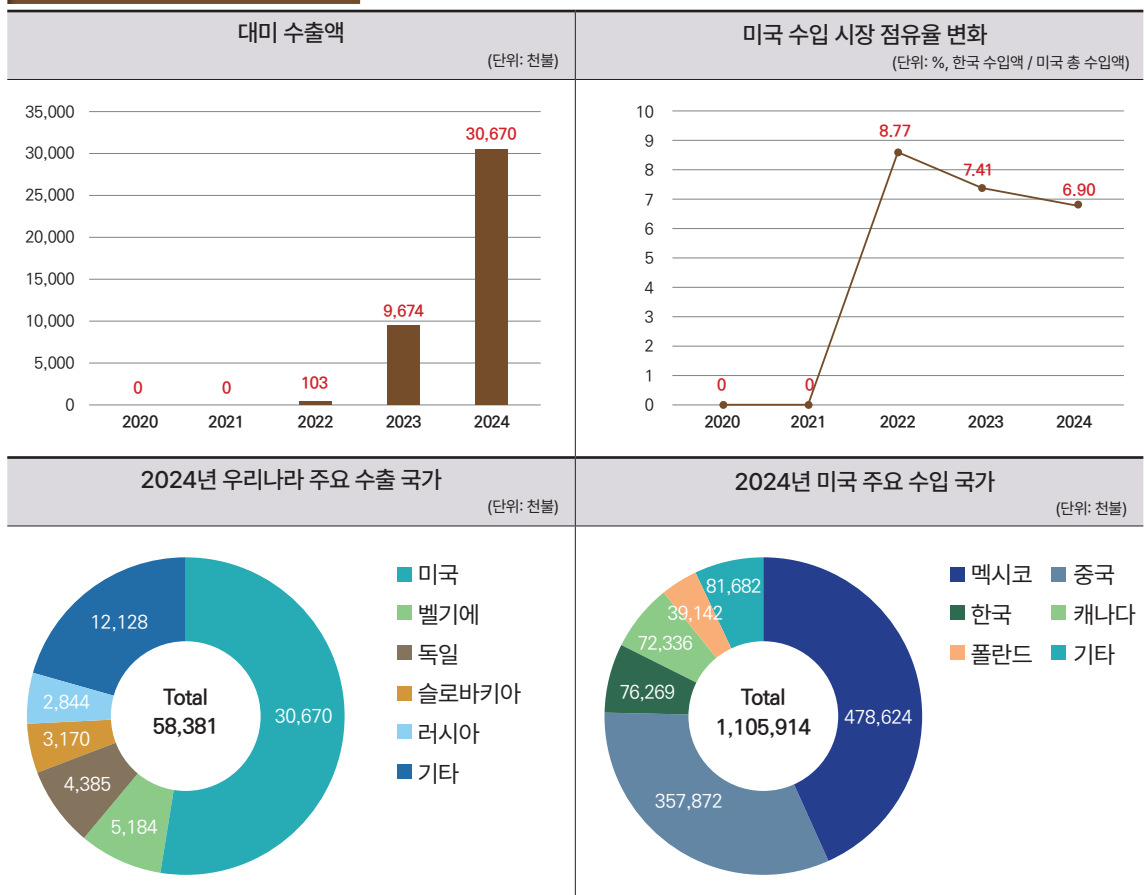
I 품목개요

품목정보

HS Code	제8708.22호		
세율	한국 기본세율	8%	
	미국 기본세율	2.5%	
	한-미 FTA 협정세율	0%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직접법 또는 순원가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55% 이상의 역내 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시장정보

제8708.22호 시장 정보



❖ 자료: K-stat

II 판정사례

사 례 명 [자동차용 전면유리] 원산지 및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판정

사례번호 NY N343290 (2024.11.04.)

사실관계

요청자	Cristales Inastillables De México SA de CV (대리인: Uni-Trade Brokers LC)	
제품	제품명	• 자동차용 전면유리 (부품번호 2000124977, 폭스바겐 ID Crozz SUV용 OEM 제품)
	구성	• 평판 유리 (중국산) • 접착제, 프라이머, 페인트 및 기타 부자재 (미국산) • 커넥터 및 기타 부속품 (멕시코 및 기타 국가)
	용도	• 폭스바겐 ID Crozz SUV 트럭용 전면유리
	완제품 HTSUS	• 8708.22.0000

제조과정



상세공정

1. 중국산 평판 유리를 멕시코로 수입
2. 벤딩 가공 (자동차용 곡면 유리로 성형하는 과정)
 - 고온(634°C) 가열 → 380개 세라믹 롤러 통과
 - 프레스 성형
 - 냉각 및 후공정을 위해 이송
4. 후공정: 라미네이션, 센서, 브래킷, 핀 등 부품 조립(기능적 완성도 제고)
5. 최종 자동차 전면유리 완성 후 테스트 및 포장
6. 미국 수출

쟁점사항

- ✓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판정
- ✓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관련 법령
및 분석

1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 판정

관련 법령 검토

- ☐ 『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19 U.S.C. §1304)』에 따르면, 예외가 없는 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외국산 물품은 그 성격에 따라 눈에 띄게, 지워지지 않게, 그리고 영구적으로 원산지가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 방식은 최종 구매자가 수입된 제품의 원산지 국가를 영어로 알 수 있도록 해야 함
- ☐ 『19 C.F.R. §134.1(b)』에 따르면, '원산지'란 해당 물품이 제조, 생산, 또는 재배된 국가를 의미하며, 다른 국가에서 추가적인 공정이나 재료가 더해진 경우, 그러한 국가가 원산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에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이 발생해야 함
 - 단, NAFTA 또는 USMCA 물품에 대해서는 『19 C.F.R. § 102』에서 규정하는 별도의 원산지표시 규정이 적용됨
 - 『19 C.F.R. § 102.11(a)』에 따르면, 물품의 원산지표시를 위한 원산지판정은 다음에 따름
 - ① 해당 물품이 전적으로 그 국가에서 획득되거나 생산된 경우
 - ② 해당 물품이 전적으로 자국산 재료만으로 생산된 경우
 - ③ 해당 물품에 포함된 모든 외국산 재료가 『19 C.F.R. § 102.20』에 명시된 적용 가능한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고, 모든 기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 자동차용 전면유리의 경우, 외국산 재료가 사용되어 ③의 기준을 적용해야 하며, 이에 따라 『19 C.F.R. § 102.20』에 명시된 제8708.22호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은 다음과 같음
 -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판정 결과

- ☐ 제공된 자재명세서(BOM)에 따르면 중국산 평판 유리를 포함한 모든 외국산 부품은 제8708호 이외의 호에 분류되어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므로 원산지표시 목적상 원산지는 멕시코임

2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 여부

관련 법령 검토

- ☐ 『Section 301(b) of the Trade Act of 1974』에 따른 추가 관세의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CBP는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의 발생 여부를 기준으로 원산지를 판단함
 - 실질적 변형의 판단은 명칭(name), 성질(character), 용도(use)의 변화에 기초하며, 제조 또는 결합 과정이 단순하여 해당 제품의 정체성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는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 참고 판례: *United States v. Gibson-Thomsen Co., Inc.*, 27 CCPA 267, C.A.D. 98 (1940)

사례

단순 라벨 부착이나 경미한 작업 후 미국에 수입된 향수 케이스

판결

제품의 본질이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 변형은 발생하지 않음

관련 법령 및 분석

❖ 참고 판례: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6 CIT 308 (1992), *aff'd*, 989 F. 2d 1201 (Fed. Cir. 1993)

사례 대만산 금속 부품이 미국에서 최종 조립되었으나, 부품 자체는 완성된 형태로 수입됨

판결 미국에서의 조립이 새로운 기능, 구조를 창출하지 않았으며 실질적 변형은 아님

❖ 참고 판례: *Anheuser Busch Brewing Association v. The United States*, 207 U.S. 556 (1908)

사례 맥주 원액이 외국에서 제조되고 미국에서 병입 및 포장됨

판결 제품의 정체성은 원액에 의해 결정되며, 미국 내 공정은 본질적 특성에 변화를 주지 않음

❖ 참고 판례: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542 F. Supp. 1026 (1982)

사례 여러 신발 부품을 미국으로 수입하여 조립

판결 완제품인 신발의 본질적 기능이 외국산 부품(갑피)에 의해 결정되므로 미국에서의 실질적 변형은 인정되지 않음

- 실질적 변형 여부에 대한 판단은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totality of the evidence)하여 이루어짐

❖ 참고 판정: *CBP Ruling (HQ) W968434*

❖ 참고 판례: *Ferrostaal Metals Corp. v. United States*, 11 CIT 470, 478, 664 F. Supp. 535, 541 (1987)

판정 결과

☑ 중국산 평판 유리는 멕시코에서 고온 가열, 성형, 냉각, 라미네이션 등의 공정을 거쳐 자동차용 전면 유리라는 식별 가능한 새로운 상업적 상품으로 변형되었으므로, 멕시코에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제301조 무역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결론

- ✓ 원산지표시 목적상 USMCA 원산지표시 기준을 충족하므로 원산지는 멕시코로 판정
- ✓ 제301조 무역제재 적용 여부 판단을 위한 원산지는 실질적 변형 기준에 따라 멕시코이며, 제301조 무역제재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Ⅲ 시사점

- 평판 유리에 가열, 성형 등의 복합 공정을 수행하여 식별 가능한 새로운 상업적 상품으로 가공하는 경우 실질적 변형이 인정됨

II 참고자료

- CBP Ruling NY N343290 (2024.11.04.), <https://rulings.cbp.gov/ruling/N343290>
- CBP Ruling HQ W968434 (2007.01.17.) , <https://rulings.cbp.gov/ruling/W968434>
- CBP 19 C.F.R. § 134, <https://www.ecfr.gov/current/title-19/chapter-I/part-134>
- CBP 19 C.F.R. § 102.11, <https://www.ecfr.gov/current/title-19/chapter-I/part-102>
- Section 304 of the Tariff Act of 1930(19 U.S.C. § 1304), <https://uscode.house.gov/view.xhtml?req=granuleid:USC-prelim-title19-section1304&num=0&edition=prelim>
-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19 U.S.C. § 2411), <https://uscode.house.gov/view.xhtml?req=granuleid:USC-prelim-title19-section2411&num=0&edition=prelim>
- United States v. Gibson-Thomsen Co. (1940),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921707/united-states-v-gibson-thomsen-co/?q=United+States+v.+Gibson-Thomsen+Co>
- National Hand Tool Corp. v. United States (1993),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6737087/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q=National+Hand+Tool+Corp.+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
- Anheuser Busch Brewing Association v. The United States (1908),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96747/anheuser-busch-brewing-assn-v-united-states/?q=Anheuser+Busch+Brewing+Association+v.+The+United+States+1908&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
- Uniroyal, Inc. v. United States (1983),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2283980/uniroyal-inc-v-united-states/>
- Ferrostaal Metals Corp. v. United States (1987), https://www.courtlistener.com/opinion/1504219/ferrostaal-metals-corp-v-united-states/?q=Ferrostaal+Metals+Corp.+v.+United+States&type=o&order_by=score+desc&stat_Published=on